

## ‘albumin-bound paclitaxel(품명:아브락산주)’ 1차 투여 보험급여기준 적용 관련 질의 응답

**질문1**

**<가. 투여단계: 1차>에서 연번 1번 ‘gemcitabine + albumin-bound paclitaxel’ 요법이 신설됨에 따라 환자 비용 부담은 공고 전과 어떻게 달라졌나요?**

- albumin-bound paclitaxel(품명: 아브락산주)에 <전이성 1차 투여>에 허가가 추가되어 ‘gemcitabine + albumin-bound paclitaxel’ 병용요법은 1차요법으로 투여 시 약값 전액본인부담(100/100)으로 인정되었으나, 2월 1일자로 심평원장이 공고한 투여대상(투여단계 1차이면서 ECOG PS 0 또는 1인 전이성 1차 투여)에 한하여 약값 본인일부부담(5/100)으로 급여 인정됩니다.
- 아울러, 한시적으로 전이성 1차 투여 대상에 해당하는 환자로서 공고 개정 시점(2016. 2. 1.)에 1차 요법으로 ‘gemcitabine’ 단독요법을 시행 중인 환자는 progression 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‘albumin-bound paclitaxel’을 추가 시 급여 인정 됩니다.
  -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명세서 특정내역 등에 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결과(전이성 등이 확인 되는 영상검사 결과 등) 등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관련 신설 1차 투여 보험급여 기준 항목

연번	항암요법	투여대상
1	gemcitabine + albumin-bound paclitaxel	전이성 (1차 투여) ※ 단, ECOG 수행능력평가(PS: Performance status)가 0 또는 1인 경우에 한함.